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조정훈·박충권·조경태

김기현 • 유상범 • 박성민

최형두 • 김장겸 • 권성동
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,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,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. 이러한 가운데,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·지역·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.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.

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

(안 제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"정한다"를 "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종별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결정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	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		
분)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	분) ①		
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			
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			
을 고려하여 <u>정한다</u> . <u>이 경우</u>	<u>사업의 종류별로 구</u>		
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	분하여 정한다. <후단 삭제>		
<u>할 수 있다.</u>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